

거래기본계약서

협력업체명 : _____

(주)신들러 엘리베이터

신들러	협력업체

－ 목 차 －

1. 거래기본계약서 1

스킨들러	협력업체



거래 기본 계약서

(주)신들러 엘리베이터(이하 “갑” 이라 한다.)와 _____ (이하 “을” 이라 한다.)는 “갑”, ”을”간의 자재, 기기,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이하 “목적물” 이라 한다.) 등을 위한 위탁거래의 기본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 및 이 기본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구입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함)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갑·을간의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 지속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개별계약의 성립】

1. 개별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이 발주하고 을이 수락함으로 성립한다.
2. 을은 발주를 거부할 의사가 있을 때에는 갑의 주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기간 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3. 개별계약에서 따로 약정한 사항과 이외의 사항은 기본계약에 의거하기로 하고, 만일 이 기본계약에 정하는 사항과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상충하는 부분에 한하여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이 우선하기로 한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1. 개별계약에는 발주 년 월 일, 목적물의 내용, 납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을, 또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정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계약 내용의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들러	협력업체



제 4 조 【계약의 변경】

1.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2. 제 1 항의 계약변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① 갑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갑과 을은 쌍방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서로 귀책이 주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 5 조 【관계자료의 제출】

1. 을은 갑과의 거래를 개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정서식에 의거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업체현황
 - ②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필요 시 연대보증인 등의 인감증명서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④ 기타 을의 신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2. 을은 전항의 제출자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변동된 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을의 대표자와 실질경영자의 연대보증】

1. 을이 법인일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이 기본계약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보증하는 동시에 필요시 그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실질 지배자(대주주 또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소지자)가 이 기본계약에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2. 을이 개인사업체의 대표자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대표자와 그 사업체의 손익을 실질상 책임지고 운영하는 실질운영자가 이 기본계약에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3. 을이 복수이거나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사업자(또는 그 대표) 이외의 사람과, 실질상 동업 관계에 있거나 익명조합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을과 위의 복수의 동업자, 실질상 동업관계자, 익명조합원 등이 이 기본계약에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제 7 조 【발 주】

1. 갑은 을에게 대하여 물품 등을 발주함에 있어 을이 동 물품을 제조 납품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하도록 한다.
2. 갑은 을에 대하여 가능한 한 장기적인 발주계획을 예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원들러	협력업체



제 8 조 【규격서류】

1. 갑이 을에게 제시하는 목적물의 규격서류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필요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기본계약, 개별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① 도면, 승인도, 목적물 규격
 - ② 검사기준, 한도건본
 - ③ 포장지시서(포장, 방진, 손상방지 및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방청 등에 관한 조치사항의 기재 포함)
2. 을은 제 1 항의 규격서류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3. 을은 제 1 항의 규격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분실하거나 그 내용을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4. 갑과 을은 필요에 따라 규격 및 제작방법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규격 및 제작방법의 변경에 따른 사후처리는 원칙적으로 변경을 일으키게 한 자가 책임지기로 한다.

제 9 조 【단가의 결정】

1. 단가는 수량, 규격,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른 적절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2. 제 1 항의 단가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갑이 지정하는 인도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3. 단가 결정의 기초가 된 제 1 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에 변경된 때에는 갑 또는 을은 단가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10 조 【재료 및 부품의 지급】

1. 갑은 을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목적물의 품질의 유지,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갑의 목적물의 제작 등에 필요한 재료 및 부품(이하 “지급품”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품의 인도장소 및 기타 유·무상지급의 구분, 인도일, 품명, 수량, 대금 및 대금지불방법 및 불량 지급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그 조건과 내용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원들러	협력업체



2. 갑이 지급품을 갑의 지정업자로 하여금 직접 을에게 인도하게 하는 경우, 을은 그 지급품을 수령한 후 즉시 갑 명의 귀중으로 표시한 수령증명서를 갑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을은 지급품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해야 하고, 지급품에 하자, 혹은 수량부족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갑은 을로부터 지급품에 관한 하자나 수량부족 등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갑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지급품의 대품 혹은 부족분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
5. 을이 작업도중에 지급품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작업을 중지하고 즉시 갑에게 하자에 관한 상세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동서면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을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6. 을이 제 2 항, 제 3 항, 제 5 항의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였거나, 확대된 손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11 조 【지급품의 소유권】

제 10 조에 의하여 지급된 유상지급품의 소유권은 을이 그 대금을 갑에게 완제할 때까지 갑에게 유보되고, 무상지급품의 소유권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제 12 조 【치공구 등의 대여】

1. 갑은 목적물의 품질의 유지,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 등의 위탁과 관련한 치공구, 측정구, 설비, 금형(이하 "대여품" 이라 한다)등을 대여할 수 있다.
2. 전항의 대여에 관한 방법, 기간, 차임 등은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3 조 【지급품 및 대여품의 취급】

1. 을은 지급품(갑 소유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은 뜻임) 및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는 지급 및 대여 된 목적 이외에 전용 또는 유용하거나, 제 3 자에게 매각, 대여, 담보권 설정 등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을은 지급품 및 대여품에 관하여 갑의 소유임이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고유의 소유물과 구별하기 위한 필요한 명인 방법에 의한 공시조치를 하여야 하고, 또 물품관리 장부상에도 갑의 소유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분 기재하여야 한다.
3. 을은 무상지급품의 잔재, 단재, 절분 등에 대해서는 갑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요청에 의해 갑이 잔재 등을 을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대금채권은 갑이 을에게 부담한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원들러	협력업체



4. 을은 갑 또는 갑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을의 영업시간내에 을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급품 및 대여품에 대한 사용 및 보관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이 기본계약에 의하여 승낙한다. 이 경우 을은, 갑의 조사, 확인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5. 갑은 전항에 의한 조사, 확인 결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세워, 을에게 그 개선 방안에 따라 지급품 및 대여품을 사용 보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개선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6. 을은 조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의 강제집행이나 파산선고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및 노동쟁의, 기타 일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대금 완제전의 지급품 및 대여품에 대하여 갑의 소유임을 밝혀서 해당 강제집행 등의 목적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필요에 따라 이들 물품의 보관 장소를 이전하는 등 갑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위의 사실 및 경위를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을은 지급품 또는 대여품 등을 유상으로 양도 받아 그 대금을 완제한 경우에도 제 6항과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갑이 발주한 목적물의 납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급품 또는 대여품 등의 처리는 사후에 감가상각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을은 이 조항상의 을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지급품 및 대여품의 멸실, 훼손】

을이 갑의 지급품 및 대여품을 멸실, 훼손시킨 경우에는 갑에게 원상태의 대품을 제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 15 조 【무상지급 재료의 가공 불량 시 손실부담】

을은 갑의 지급품 중 무상지급한 재료 등에 가공불량을 발생시킨 경우 또는 갑의 지급품으로 인하여 발주물품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량 발생에 대한 보상책임은 그 원인 제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6 조 【금형제작 및 상각】

1. 목적물의 제조 및 가공에 필요한 금형은 을의 비용부담으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실제제작비는 갑이 동금액을 생산예정 목적물 수량으로 분할하여 목적물의 단가에 포함하는 방식에 의하여 상각하기로 하고, 금형비계산 및 상각수량은 갑·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2. 전항에 의하여 상각이 완료된 금형은 갑의 소유로 되며, 미상각된 금형이라도 갑이 그 미상각된 금액을 을에게 지불함으로써 갑의 소유로 할 수 있으며,

원들러	협력업체



미상각금액 지불 이후의 목적물의 단가는 그것에 포함된 금형비만큼 인하조절 되는 것으로 한다.

- 3. 상각금형에 있어서 갑이 금형제작비의 일부를 변제하였을 경우, 그 금형은 갑·을의 공유로 하며, 각자의 지분은 금형비의 부담분으로 하고 사용권은 갑이 갖기로 하며, 금형비의 전액이 을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소유권은 을이, 사용권은 갑이 갖는 것으로 한다.
- 4. 갑은 목적물의 품질의 유지,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제작에 필요한 치공구 및 금형을 제작하여 을에게 대여 또는 매각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대가 등 대여(매각)조건에 관하여는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7 조 【납 기】

- 1. 납기는 개별계약서(주문서)상에 기재된 물품 및 수량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 (일반적으로 갑의 사업장)에 인도하는 시점을 말한다.
- 2. 전항의 납기는 개별계약(주문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8 조 【납품방법】

- 1. 을은 목적물을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납품절차에 따라 갑이 정하는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갑은 이것을 인수하고 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납품표 또는 거래명세서” 이라 한다)를 을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 2. 을은 납기의 선행, 지연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 이상납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갑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3. 을은 제 2 항의 이상납품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4. 을은 목적물의 납품 시 개별계약 또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면, 시방서, 취급 설명서 등을 목적물과 함께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갑은 을로부터 인수한 도면 등을 목적물의 검사 및 운용 등이 계약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5. 을은 특약이 있거나 갑이 승낙한 경우 이외에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을이 분할납품을 하였을 경우 갑은 그의 선택으로 일시 보관만을 할 수 있다. 일시 보관에 따른 일체의 책임과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6. 을은 목적물의 납품 시 포장규격, 포장수량 등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7. 갑은 발주한 물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의 납품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할 경우 을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원들러	협력업체



제 19 조 【검 수】

1. 갑은 을이 목적물을 납품할 때마다 목적물을 검수하는 것으로 한다. 검수기준 및 방법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
2.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수결과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제 2 항에 의한 검수통지에서 불합격품으로 분류된 목적물은 제 18 조 제 1 항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발급한 수령증에 기재된 수량에서 당연히 제외된 것으로 보며 제 17 조에 정한 납기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4. 갑이 을로부터 납품 받은 목적물에 당초 인수당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당초 인수일로부터 1 년내에 갑이 통지함으로써 제 3 항과 같이 수령증에 기재된 수량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5. 갑은 필요에 따라 제조 등을 위탁한 목적물의 제작, 가공, 수리의 중간에 을의 사업장에 갑이 지정한 자를 파견하여 공정관리와 품질관리 등 필요한 사항의 중간 검사를 행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6. 을은 검수결과 불합격 판정에 대하여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재검수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전항에 따른다.

제 20 조 【부족분, 불합격품 및 과납품의 처리】

1. 을은 제 19 조에 따른 검수결과 수량부족 또는 불합격된 것에 대해서는 갑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부족분 또는 대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을은 본래의 납기에 대한 이상납품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제 19 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이 생겼을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3. 을이 제 2 항의 기간 내에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인수하지 아니 할 때는 갑은 이를 을에게 반송 또는 을과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송 또는 폐기에 필요한 책임과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4. 갑이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보관하는 동안 보관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경우 그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 다만 제 2 항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갑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목적물의 소유권은 갑의 검수 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시점에 을로부터 갑에게 이전한다.

원들러	협력업체



제 22 조 【목적물 대금의 지급】

1. 갑은 목적물의 대금을 개별계약에 정하여진 지급기일까지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령, 기타 관계법률상 제한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지급토록 한다.
2. 을은 납품대금을 수령할 때에는 갑에게 미리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이 등록한 인장 및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지체 없이 이를 갑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인장 및 영수증의 도난, 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3. 납품대금 수령 방법에 대하여 갑과 을은 별도계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23 조 【상 계】

1. 갑은 제 3 절에 의한 유상지급재료의 대금, 대여된 치공구 등의 대금, 기타 갑의 을에 대한 모든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목적물 대금과 기타 이 기본계약, 개별계약상의 을의 갑에 대한 모든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2. 전항의 상계는 갑과 을이 상계액에 대한 수령증을 교환하는 방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갑이 그 명세를 을에게 통지 함으로써도 상계할 수 있다.

제 24 조 【품질보증】

1. 을은 목적물에 대해 기획, 설계, 생산, 판매 등 전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보증체제를 확립, 운영하여 제 8 조의 규격서류에 일치시키고 또한 갑이 요구하는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보증 활동을 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하고 제 1 항의 품질보증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3. 을은 목적물 중 주요공정 및 공법의 변경, 외주선의 변경, 금형의 수정 및 재제작, 재료변경 등의 경우에 갑에게 시제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을이 목적물에 대해 품질을 보증하지 못해 갑에게 중대한 품질적 악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5 조 【하자담보책임】

을은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후 4년 이내에 목적물에 숨겨진 하자가 발견된 경우 그 하자의 보수, 대체품의 납품, 대금감액 및 하자에 기인하는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또한 목적물의 특성상 4년 이내에 목적물의 숨겨진 하자의 발견이 어려운 경우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원들러	협력업체



단,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목적물과 관련된 법령이 품질 보증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본다.

제 26 조 【제조물 책임】

1. 을은 갑이 발주한 목적물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조물 책임에 관한 모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을은 이 기본계약, 개별계약에 의거, 자신이 갑에게 공급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인적 피해 또는 물적피해로부터 갑을 보호하며, 이로 인하여 제 3 자로부터 갑에게 제기되는 소송 등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방어하여야 한다. 단, 갑이 을에게 제공한 규격서류 자체의 하자에 기인하는 사고임을 입증된 경우에는 갑이 동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갑이 제 2 항에 의한 청구 및 소송으로 인해 비용을 지출했을 시 을은 그 비용을 보상한다.

제 27 조 【유사품 등의 제작, 판매금지】

1.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갑이 제공한 규격서류를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거나 이를 제 3 자에게 판매, 양도할 수 없다.
2. 을이 전항에 위반하여 제작, 판매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을이 제 3 자에게 목적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여 얻은 수익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 28 조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대한 협력】

1. 갑은 본 계약기간동안 목적물의 품질유지 을의 신용도 파악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을에게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관한 자료 및 결산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목적물의 생산 및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을의 공장설비, 생산관리실태 등을 수시 조사 할 수 있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제 1 항과 관련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 29 조 【개선안의 협력】

1. 을은 목적물의 품질개선, 납기준수, 가격의 합리화 등을 위한 개선제안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경우 을의 제안에 따른 효과가 있을 때는 갑과 을이 함께 그 효과를 배분한다.
3. 개선제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원들러	협력업체



제 30 조 【지도 및 협력】

1. 갑은 목적물의 제작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을에게 제작기술, 공법, 자재 및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지도와 조언을 위해 현장에 출장하여 이를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요청이 있고 아울러 품질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갑의 기술자를 을의 사업장에 파견하거나 갑의 공장에서 필요한 기술지도 및 훈련을 시킬 수 있다.

제 31 조 【지적재산권의 실시 및 출원】

1. 을은 목적물의 제작과 관련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이하 "지적재산권" 이라 한다) 및 노우-하우(KNOW-HOW)를 목적물의 제작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갑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 3 자에게 지적재산권 및 노우-하우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
2. 을은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의거, 자신이 갑에게 공급한 목적물과 관련하여 제 3 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 갑에게 통지하는 한편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동 침해 분쟁 등을 방어하고 또한 이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 침해 분쟁 등이 갑이 제공한 규격서류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으로 목적물의 판매나 사용이 금지될 경우, 을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제 3 자로부터 지적재산권의 실시권을 확보하거나 목적물이 침해가 되지 않도록 수정, 교체하거나 또는 목적물의 대금전액을 갑에게 반환하고 갑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을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갑의 도면,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된 목적물 및 그 제작방법에 관하여 지적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 또는 목적물에 관하여 갑과의 공동연구, 중요 부분에 대한 갑의 지도 및 아이디어의 제공에 의거 지적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에 갑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갑과 지적재산권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 한 사유로 갑의 사전허락 없이 을이 지적재산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 없이 갑에게 권리를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단, 갑과 을이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원들러	협력업체



제 32 조 【이행의무】

1. 을은 제조 등을 위탁 받은 물품에 대하여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제작 등을 위탁할 수 없다.
2. 을은 갑의 승낙을 얻어서 갑이 제조 등을 위탁한 목적물을 제 3 자로 하여금 제작, 가공, 수리 하게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상의 이행의무를 여전히 제 3 자와 연대 하여 부담하며, 제 3 자의 선임, 감독상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나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 33 조 【기밀의 유지】

1.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갑과 을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 후에도 제 1 항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4 조 【권리의무의 양도】

갑과 을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다.

제 35 조 【계약의 해제, 해지】

1.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 서면 통보에 의거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②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 ③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 3 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을 받았거나 스스로 파산선고, 회사정리 등을 신청한 경우.
 - ④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상당기간 위반하였을 경우.
 - ⑤ 갑이 목적물의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을의 작업에 상당기간 동안 지장을 초래케 하거나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목적물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상당기간 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이 불법,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전항의 계약해지 또는 해제는 기 발생한 권리 및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들러	협력업체



제 36 조 【거래정지의 예고】

제 35 조의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상당기간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에 따른 보상 및 기타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37 조 【계약의 해제, 해지 후의 조치】

1. 을은 이 기본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갑으로부터 인수한 규격서류 대여품 및 무상 지급품 등을 갑에게 신속히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목적물의 제조, 가공, 수리 등에 사용되는 모든 금형 등과 유상지급품 등을 제 3 자에 우선하여 갑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매 조건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2. 이 기본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납기 전의 목적물(작업중인 것도 포함됨)에 대하여 납품을 요청할 수 있다.
3. 갑은 제 2 항에 따라 납품 받은 납기 전의 목적물을 직접 완성시키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을 소유의 재료, 기기, 도면, 치공구 등을 을로부터 양수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38 조 【손해배상청구】

갑 또는 을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9 조 【잔존의무】

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기간이 만료 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도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 ① 제 25 조에 정하는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
- ② 제 26 조에 정하는 제조물 책임에 관한 사항
- ③ 제 27 조에 정하는 유사품 등의 제작, 판매금지에 관한 사항
- ④ 제 31 조에 정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 ⑤ 제 33 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 ⑥ 제 40 조에 정하는 종업원 채용에 관한 사항

제 40 조 【종업원 채용】

갑과 을은 서로 상대방의 종업원을 상대방의 사전 승낙 없이는 채용할 수 없으며, 퇴사 자라 할지라도 퇴사 후 6개월이내에는 채용할 수 없다.

원들러	협력업체



제 41 조 【계약보증금】

1. 을은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위반으로 갑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의 요청 시 보증금으로 갑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제공한다.
2. 을은 전항의 갑의 요청 시 보증금으로 국·공채, 증권거래소의 상장된 주식, 기타의 유가증권을 갑에게 보관시킴으로써 전항의 보증금 제공의무에 갈음할 수 있다.
3. 갑이 을의 귀책사유로 을로부터 제공 받은 보증금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그 초과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42 조 【연대보증인】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은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및 부속계약에 의하여 을이 갑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며, 갑이 합리적으로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을은 새로운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제 43 조 【협의해결】

이 기본계약, 개별계약 및 부속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관련법령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해결토록 한다.

제 44 조 【특약사항】

1. 이 기본계약은 이 기본계약 체결 이전부터 존속하는 개별계약 및 부속계약이 있을 경우 동 개별계약 및 부속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 이 기본계약을 기초로 하여 이미 발생한 갑과 을간의 권리의무는 이 기본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45 조 【합의관할】

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갑의 관할지역 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함에 동의한다.

제 46 조 【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1.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다만,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2. 제 1 항에 의한 개별계약의 실효 시 존속하는 개별계약에 대한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원들러	협력업체



Schindler

Schindler Elevator Co. Ltd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한 후 각각 1 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엠티브이북로 313
(정왕동 2665-7)

상 호 : (주)신들러 엘리베이터

대 표 자 : SCHWARER PETER JOHN (印)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印)

신들러	협력업체